

주요심결사례

2002. 11.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 행위에 대한 건 (2002단체0751)	<p>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각 구지회장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심사접수는 구지회별로 모아 접수하여 주고 개별로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자신이 제작하여 구지회가 사용중인 심사신청서 양식에 “심사신청시 관할 구지회를 경유”하도록 하여, 2001. 10 월경에 강북구지회로부터 승품(단)심사접수를 거부당한 학사체육관 관장 신동진이 신청한 승품(단)심사 접수 및 2001. 3월경에 광진구지회로부터 승품(단)심사접수를 거부당한 한영체육관 관장 민병인이 신청한 승품(단) 심사에 대하여도 심사접수를 받지 않아 수련생에 대한 승품(단)심사를 일정한 기간동안 지연시켜 구성사업자의 핵심적인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도장단체등록규정」 제5조(자격)제7항 및 제10조(부칙)제1항에 태권도 단일종목 이외의 다른 무술(합기도, 격투기, 쿵푸, 복싱, 유사종목 기타)을 교육할 경우 등록을 거부·취소하거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시행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수련생에 대한 다양한 무술지도를 제한하였으며, 「도장단체등록규정」 제9조에 기준회원도장이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한 구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을 두어 시행함으로써 수련생의 여건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도장위치 변경까지도 제한하는 행위로써,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장단체등록규정」 제5조(자격)제7항, 제9조(명의변경 및 위치변경), 제10조(부칙)제1항, 「승품(단) 심사신청서」 양식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동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18,600천원

2002. 11. 2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남양유업(주)의 부당한 광	남양유업(주)은 2002년 6월 15일자 및 2002년 7월 기간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고행위에 대한 건(2002광고0992)	<p>중 조선일보 등에 “헛똑똑이 엄마는 되지 않겠다!”는 헤드카피와 함께 “수입유아식을 먹이면 키가 더 큰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있다지요? 이런 터무니없는 헛소문만 듣고 유아식을 선택하는 헛똑똑이 엄마들이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엄마라면 그 품질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후, “남양 임페리얼드림의 분명한 차이! 수입유아식과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라는 표시 아래에 성분비교표를 통하여 [남양 임페리얼드림]과 [씨밀락어드밴스]의 제품에 대해 비교하였는데, 동 표현에서 말한 수입유아식은 다름아닌 [씨밀락 어드밴스]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품질의 차이’는 [남양 임페리얼드림]과 [씨밀락 어드밴스]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자사 제품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에 비해 더 좋다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현명하고 똑똑한 엄마”이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헛똑똑이 엄마”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방하여 광고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표시 · 광고법 제3조제1항제4호 위반</p>	<p>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 × 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2. 11. 2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SK텔레콤(주), (주)케이티프리텔, (주)LG텔레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2광고0698, 0699, 0700)	<p>SK텔레콤(주)은 2001. 10. 30부터 2001. 11. 21까지 모바일카드의 일종인 “모네타카드”를 통한 단말기구입제도에 대해 광고하면서 “최신 휴대폰 구입시 최고 1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드립니다”라는 소제목하에 “최신 휴대폰 가격에서 최대 15만원을, 최장 3년까지 포인트로 결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로 표현하고, 2002. 1. 22부터 2002. 5. 31까지 “지금 모네타카드를 만드시면 최신 011휴대폰 가격이 최고 20만원까지 내려갑니다”라는 표제하에 “최신 011휴대폰으로 교체할 때 최대 20만원을, 최장 3년까지 포인트로 결제하는 포인트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로 표현하면서 신문광고 말미에 작은 글씨로 “※포인트폰 프로그램은 제휴카드사의 금융상품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 × 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주) : 10억 4천만원 • (주)케이티프리텔 : 6억 7천 2백만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로 … 연 9%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로 표현하였고, (주)케이티프리텔은 2001. 11. 27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모바일카드의 일종인 “KTF멤버스카드”를 통한 단말기구입제도에 대해 광고하면서 “지금 당장 나는 KTF멤버스 신용카드로 최신형 휴대폰을 20만원까지 할인 받는다”라는 표제하에 “최신 휴대폰을 부담없이! 폰 세이브프로그램, 할인 받은 금액은 향후 3년 동안 카드사용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0.9%)가 저절로 갚습니다”로 표현하였고, (주)LG텔레콤은 2001. 11. 12부터 2002. 3. 29까지 모바일카드의 일종인 “эм플러스카드”를 통한 단말기 구입제도에 대해 광고하면서 “쉽게 말해서 최신 형 휴대폰 값을 최고 30만원까지 할인해 주는 카드입니다”라는 표제하에 “가입 즉시 휴대폰을 최고 30만원까지 먼저 할인 받고 할인 받은 금액은 카드를 쓸 때마다 0.9%씩 포인트로 적립되어 저절로 갚아지는 LG텔레콤 엠플러스카드의 <폰바로할인서비스>” 등으로 표현하고, 동 카드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모바일 결제” 등으로 표기 하였는데, 이는 단말기 구입대금 중 최고 15~20만원, 20만원 또는 30만원을 먼저 할인해 주고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갚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신용카드회사가 선용자 지원하고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9%, 7% 또는 9% 대의 이자가 수수료형태로 부과됨에도 동 광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치 단말기 대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되므로 표시 · 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고, (주)LG텔레콤은 광고에서 동 카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바일 결제” 등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2002. 7월 현재 관련기술 개발의 지연으로 “모바일결제”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확정된 근거 없이 동 카드에 모바일 결제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되므로 표시 · 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LG텔레콤 : 3억 8천 4백만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7개 백화점사업자와 (사)한국백화점협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2002유거1083)	<p>롯데쇼핑(주), (주)현대백화점, (주)신세계, (주)한화유통, (주)대구백화점 및 화성산업(주)등 6개 백화점사업자들은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 보다 높게 적용되는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2001. 11. 8~2002. 3. 7간 (사)한국백화점협회 주관으로 7차례의 회합을 거쳐 백화점 매장에서 삼성 및 엘지카드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들 중 롯데쇼핑(주), (주)현대백화점, (주)신세계 및 (주)한화유통 등 4개사는 2002. 3. 9 ~3. 18까지 동 합의내용을 실행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백화점 매장에서 고객이 엘지 및 삼성카드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제시 요구, 타사카드 사용권유 또는 백화점카드 발급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엘지 및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였고,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게 될 경우를 예상하여 과징금 규모 및 피심인별 분담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사)한국백화점협회는 회의소집, 주재, 회의장소 제공, 회의자료 준비, 회의결과 정리 및 회원사 통지 등 구성사업자들인 백화점사업자들의 특정 신용카드 취급제한을 위한 합의 및 실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또한 백화점상품권 할인판매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는 롯데쇼핑(주), (주)현대백화점, (주)신세계 및 (주)엘지유통 등 4개 백화점사업자들은 2002. 1. 14~1. 25간 (사)한국백화점협회 주관으로 3차례의 회합을 갖고 백화점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기업 등에 대해 일정율을 할인판매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는 “상품권할인판매금지규약”을 작성, 2002. 3.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동 합의내용은 2002. 1. 22. 삼성카드사가 출시한 카드형 상품권(Gift 카드)에 대한 대응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실행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사)한국백화점협회는 회의소집 및 주재, 회의장소 제공, “상품권할인판매금지규약” 초안작성 등 회의자료 준비, 회의결과 정리 및 회원사 통지 등 구성사업자들인 백화점사업자들의 백화점상품권 할인판매 금지를 위한 공동합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7개 백화점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및 백화점상품권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쇼핑(주) : 759백만원 • (주)현대백화점 : 383백만원 • (주)신세계 : 243백만원 • (주)한화유통 : 31백만원 • (사)한국백화점협회 : 38백만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위를, (사)한국백화점협회는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1조 및 제27조 위반	
5개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대한 건(2002유거1096)	<p>엘지카드(주), 삼성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외환신용카드(주), 비씨카드(주)는 백화점들과 할인점들에 대해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67~73% 차별하였고, 2002. 8. 15. 현재 엘지, 삼성, 국민 및 비씨카드는 백화점들의 요구에 따라 백화점에 적용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출액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하하였는데, 수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가맹점별로 매출액 규모 등의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구분하여 어느 일방 업종에 대해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 위반</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지카드(주) : 740백만원 • 삼성카드(주) : 740백만원 • 국민카드(주) : 640백만원 • 외환신용카드(주) : 440백만원 • 비씨카드(주) : 240백만원